

# 발명장려사업 추진 및 세부

## 특허청 고시 제88~4호 의거 새해

특허청 고시 제88~4호 발명장려사업 추진 요령에 의거한 발명장려사업 추진 세부요령이 발표되었다.

이 요령의 주요내용은 ▲발명장려관 설치 운영 ▲전국우수발명품 및 학생발명품전시회 ▲우수발명 시작품 제작비 지원 ▲발명품 기업화 추진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▲국제전시

회 출품등 지원 ▲발명의 날 기념 전국발명장려대회 개최등의 세부적인 내용이다.

요령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국제전시회의 출품비가 80% 범위내에서 지원되며, 발명의 날 기념 전국발명장려대회의 시상 대상폭이 크게 넓어졌다.

전문을 2회로 나눠 소개한다. <편집자 주>

특허청 고시 제88~4호 내용	세부 요령 내용
<p><b>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</b></p> <p><b>제 1장 총 칙</b></p> <p>제 1조 (목적) 이 고시는 발명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조 (용어의 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‘영세발명자’라 함은 생활보호법 제3조에서 정한 보호대상자로서 발명, 고안을 한 자를 말한다.</li><li>‘중소기업자’라 함은 중소기업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li><li>‘학생 발명 반’이라 함은 국민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및 대학(사범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을 포함한다)에 설치된 학생 발명 활동반으로서 특허청에 신고된 발명 반을 말한다.</li><li>‘외국출원’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에 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.</li><li>‘국제전시회’라 함은 외국에서 국제적 규모로 개최되는 발명 품 및 신기술전시회로서 한국발명특허협회가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 출품업무를 주관한 전시회를 말한다.</li></ol> <p>제 3조 (발명장려사업의 종류) 이 고시에서 정하</p>	<p><b>발명장려사업 추진 세부요령</b></p> <p><b>제 1장 총 칙</b></p> <p>제 1조 (목적) 이 요령은 특허청 고시 제88~4호 제4조 규정에 의거 발명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조 (운영세칙) ①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</p> <p>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</p>

# 요령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

## 부터 국제 전시회 출품비 지원 등 다양

특허청 고시 제88-4호 내용	세부 요령 내용
<p>는 발명장려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발명장려관의 설치·운영</li><li>2. 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 개최</li><li>3. 우수발명시작품제작비 지원</li><li>4. 외국출원비용 지원</li><li>5. 국제전시회 출품 지원</li><li>6. 학생발명반 활성화 지원</li><li>7. 발명품기업화추진심의위원회 설치, 운영 등</li></ol>	
<p>제 4 조 (한국발명특허협회규정) ①제3조의 발명장려사업 중 한국발명특허협회(이하 '협회'라 한다)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발명특허협회 회장(이하 '회장'이라 한다)이 그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</p>	
<p><b>제 2장 발명장려관의 설치·운영</b></p> <p>제 5 조 (발명장려관의 설치·운영) ①발명품의 상설전시 등 사업을 위하여 협회에 발명장려관을 설치, 운영한다.</p> <p>②특허청장은 발명장려관의 설치,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 6 조 (발명장려관의 사업) 발명장려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발명품의 상설전시사업</li><li>2. 발명의 기업화를 위한 상담 및 유통알선사업</li><li>3. 기타 발명의 연구 및 장려에 관한 사업</li></ol>	<p><b>제 2장 발명장려관 설치·운영</b></p> <p>제 3 조 (설치장소) 발명장려관은 서울시내에 설치하고 한국발명특허협회 사무실과 동일한 소재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설치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이전된 주소지를 적용한다.</p> <p>제 4 조 (설치공사) 발명장려관의 설치공사는 정부공사 입찰규정에 의한다.</p> <p>제 5 조 (설치·운영) 발명장려관은 국민들의 발명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특허기술정보를 제공하며 발명의 기업화 실시 알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실 및 상담실, 자료실, 상설전시실등으로 구분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제 6 조 (연구실) 회장은 발명에 관심 있는 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자료를 비치하고 발명연구실을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제 7 조 (상담실) 발명의 기업화알선, 발명품의 매매, 수출등의 유통 상담과 금융지원을 알선하기</p>

특허청 고시 제88-4호 내용	세 부 요 령 내 용
	<p>위하여 발명장려관에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<b>제 8조 (운영관리)</b> ① 회장은 발명장려관에 관리요원을 두어 특허청 고시 제88-4호 제6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취급관리토록 한다. ② 관리요원은 소관업무의 운영관리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한다.</p>
	<p><b>제 9조 (출품대상)</b> 발명장려관의 출품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의 발명, 고안증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업소유권법에 의하여 출원 또는 등록된 발명, 고안품</li> <li>2. 우수발명시작품</li> <li>3. 해외전시회 수상품</li> <li>4. 기타 전시가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명발, 고안품</li> </ol>
	<p><b>제10조 (출품신청)</b> 발명장려관에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
	<p><b>제11조 (출품규격 및 진열기간)</b> ① 출품물의 규격은 부피 <math>1m^3</math>, 무게 70kg이내 이어야 한다. 다만, 이규격을 초과하거나 특수시설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실물이 아닌것은 사전에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② 발명품의 진열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장려관의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
	<p><b>제12조(전시품 선정심사위원회)</b> ① 회장은 전시품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특허청관계관, 변리사, 학계 및 업계, 협회 상근 이사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회 상근부회장이 된다. ② 심사위원회가 전시품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발명의 기술적 우수성</li> <li>2. 발명의 기업화 가능성</li> <li>3. 발명의 양도, 실시하여 가능성</li> <li>4. 발명의 실용여부</li> </ol> <p>③ 전시품의 선정준위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영세발명자, 개인발명자, 중소기업, 대기업 순으로 한다.</p>
	<p><b>제13조 (발명품의 반입 및 반출)</b> 발명장려관에 출품이 확정된 자는 (계약서식 1호)을 체결하고 반입(출)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시된 발명품을 일시 반출하고자 할때는 회장의 별도승인에 의 한다.</p>
	<p><b>제14조 (발명품 진열)</b> 회장은 발명사상양양 및 장</p>

특허청 고시 제88-4호 내용	세 부 요 령 내 용
	<p>터 등을 위하여 우수발명품, 발명의 기업화 성공사례품, 기타 발명장려를 위한 자료나 물품등을 전시할 수 있다.</p>
	<p><b>제15조 (수수료)</b> 발명품전시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발명의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특수장치가 필요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품자가 부담한다.</p>
	<p><b>제19조 (개관)</b> ①발명장려관은 공휴일, 국경일과 회장이 지정한 임시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.</p>
	<p>②개관시간은 09:30부터 폐관시간은 평일은 17:00, 토요일은 12:30까지로 한다. 다만, 회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관 및 폐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
	<p><b>제17조 (발명품대여)</b> 국가기관 또는 기타 단체나 기업에서 발명품의 대여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출품자의 협의후 일정기간 대여할 수 있다.</p>
	<p><b>제18조 (발명품의 판매알선)</b> 특허청고시 제88-4호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자의 회망에 따라 협회는 발명품의 판매를 알선 할 수 있다.</p>
	<p><b>제19조 (발명장려관의 이용과 손해배상 등)</b> ①발명장려관 출품자, 이용자 또는 관람자가 이 요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회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발명장려관 출입중단</li> <li>2. 발명장려지원업무의 중지</li> <li>3.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요구</li> </ul>
	<p>②발명장려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재, 파손,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손해를 입힌때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.</p>
	<p><b>제20조 (안전관리)</b> ①전시자가 위험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양식에 의하여 협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
	<p>②위험물 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반입자 책임으로 하고 위험물에 관한 제반사항은 해당 법령에 준한다.</p>
	<p><b>제21조 (관람규칙)</b> 관람자는 발명장려관내에서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전시물품 파손행위의 금지</li> <li>2. 고성방가 금지</li> <li>3. 기타 발명장려관의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금지</li> </ul> <p>〈2月號에 계속〉</p>

발 명 은 국 력 이 다 !